

(國)(外)(事)(件)

住所變更審決効力과 公示送達違法性

<日本最高裁 1981年 3月 27日判決 1980年(行ツ) 30號>

1. 上告人 : Y

2. 被上告人 : X

3. 判決

上告를棄却한다.

4. 事件概要

Y는 1976年 5月 11日字 登錄 95
4167號 商標의 商標權者인 X를 被
請求人으로 하여 商標法50條 1項에
의거 本件 商標의 登錄을 取消하도록
審判을 請求하였으나 1976年 審
判5163號 事件으로 審理되어 1978年
2月 1日字로 登錄取消를 審決하였다.
그후 이 審決謄本은 1978年 6
月 14일에 X에게 公示送達되었다.

公示送達理由는 X가 本件 商標登
錄後에 本社 所在地를 變更하여 現
住所에 移轉하였으나 이 事實을 特
許廳에 申告하지 않았고 또 同審判
請求後에 特허청이 同審判節次中 答
辯書發送 때에도 受取人不明으로
返送되어 審決謄本送達도 반송되었기
때문에 공시송달한 것이다.

그러나 X는 이 審判提起나 심결
이 있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
실을 他人으로부터 전해듣고서야
同審決取消訴訟을 請求하였으며 그
소송도 이미 出訴期間이 經過한 다음
東京高法에 提訴하였던 바 特허
청이 1978년 2월 1일에 同廳 1976年
審判5163號 事件5163號로 한 심결을
취소한다고 한 사건의 判決인 것이다.

5. 判決要旨

商標法 77條5項에 의해 準用되는
特許法 191條의 規定에 의거한 公시

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者의 주소,
居所 其他 送達될 場所를 몰랐을 때
에 이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.
따라서 商標法 50條의 규정에 의
거한 商標登錄取消審判事件의 請求
人인 商標權者가 商標登錄後 그 本
社 所在地를 變경하고 이에 따라
특허청에 대한 申告를 하지 않았으
나 商標登錄節次를 끝냈을 경우에
는 이 商標登記의 登記簿 내지 그
謄本에 대해 調査를 하면 송달을
받아야 할 者로서의 이 被請求人住
所를 容易하게 探知할 수 있는 것
이다.

그리므로 그 주소, 거소, 그외의
송달 장소가 알 수 없을 때에 該當
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同人에 대
하여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要件이
具備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. 이
경우는 피청구인에 대해서 한 공시
송달은 그 요건이 缺如되어 效力이
없다고 解釋함이妥當하다.

그리고 原審이 確定한 바에 의하
면 本件 商標登錄取消審判請求事件
에서 피청구인이었던 被上告人은
본전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받은
다음 그 본사 소재지를 舊住所에서
現住所로 移轉하고 이에 隨伴하여
이 주소의 이전에 대해 特허청에
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商業登
記節次는 終了하였다.

그럼에도 不拘하고 審判長이 피
상고인에 대해서 해야 할 審判請求
書副本送達 및 特許廳長이 피상고인
에 해야 할 前記 審判事件審決謄本

送達이 公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다
하므로 피상고인에 대한 이 공시송
달에 의한 審判請求書副本 및 本件
審決謄本送達은 어느 것도 公시송달
의 요건이 缺如되어 그 效力이 발
생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.

그러나 피상고인에 대한 본건 심
결등본의 公시송달효력이 발생하지
않은 이상 본건심결의 取消請求本
訴出訴期間은 進行을 시작할 理由
가 없으므로 피상고인에 대한 本訴
에의 提起는 30日의 不變期間經過
後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
더우기 訴訟行爲의 追完을 기다릴
것도 없이 처음부터 違法이라고 해
야한다.

다음에 前記 商標登錄取消審判事
件에서는 審判長은 피청구인에 대
하여 청구인이 提出한 審判請求書
副本을 송달하고 必要한 기간을 指
定하여 答辯書를 제출하는 機會를
주어야 한다. 이는 商標權者인 피청
구인에 대하여 防禦權을 行使할 기
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違法이
다.

原判決이 訴訟行爲의 추완에 의
해 피상고인이 提起한 본건 심결취
소소송의 제소를 超법이라 한 見解
는 이를 是認할 수가 없으나 본건
심결이 위법이라고 한 結論 自體는
正當하다.

6. 解說

본건의 一般的效力은 商標法에 局
限한다고 判断했다는 것이 輿論이
되어 있다.